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8
----------	------

제출연월일: 2023. 8. 25.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학생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정의에 “다목적체육관” 명시(안 제2조)

나.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요금 등 별표 개정(별표1, 별표2)

다.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사용료 감면 신설, 체육시설 관리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배상비율 규정 신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한부모,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사용료 감면사항 추가 반영(가족복지과-30345호, 2023. 7. 27.)

라. 입법예고: 2023. 7. 24. ~ 8. 14.(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구장·야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수영장”을 “축구장·야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8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

별표1 중 학생다목적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생다목적체육관	학생동 188-9	배드민턴장, 다목적실, 화장실 등	
----------	-----------	--------------------	--

별표2 중 학생다목적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학생다목적체육관	월회원	개인	25,000	2시간 기준
		클럽	12,5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u>축구장·야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공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수영장</u>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 ~ 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축구장·야구장·생활체육공원·배드민턴장·족구장·공도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수영장·<u>다목적체육관</u></u> ----- ----- -----.</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을 하나만 적용한다.</p> <p>1.·2. (생략)</p> <p>3. 100분의 50 경감 가. ~ 차. (생략)</p> <p>&lt;신설&gt;</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가. ~ 차. (현행과 같음)</p> <p>카.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다문화가</u></p>

<신 설>

<신 설>

카.·타. (생 략)

4. 100분의 30 경감

가. ~ 다.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9조(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 3. (생 략)

<신 설>

주

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 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

주

하.·거. (현행 카목 및 타목 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5.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반환)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p>② · ③ (생략)</p>	<p><u>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u> <u>전액 반환</u></p> <p><u>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u> <u>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u> <u>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u> <u>배상</u></p> <p><u>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u> <u>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u> <u>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u> <u>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u> <u>배상</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 근거법규

###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3. 작성자

- 소 속: 교육지원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권일구
- 연락처: (052)290-3671

[별표 1]

【현 행】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제2조의2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요시설	비고
원 학 정	성동1길 15-15	사대 및 과녁	
성안생활체육공원	함월1길 145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십리대밭축구장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	
유곡테니스장	종가로 65	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	
함월구민운동장	성동1길 2	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	
중구수영장, 중구테니스장	종가로 305	수영장(25m×8레인), 테니스장(3면)	
중구다목적구장	약사동 936 일원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중구야구장	성안동 631 일원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개정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제2조의2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요시설	비고
원 학 정	성동1길 15-15	사대 및 과녁	
성안생활체육공원	함월1길 145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십리대밭축구장	태화동 800번지	인조잔디축구장 및 부대시설	
유곡테니스장	종가로 65	테니스장, 화장실, 관리실 등	
함월구민운동장	성동1길 2	인조잔디축구장, 야외공연장, 화장실, 관리실 등	
중구수영장, 중구테니스장	종가로 305	수영장(25m×8레인), 테니스장(3면)	
중구다목적구장	약사동 936 일원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중구야구장	성안동 631 일원	인조잔디구장, 화장실, 관리실 등	
학성다목적체육관	학성동 188-9	배드민턴장, 다목적실, 화장실 등	

[별표 2]

【현 행】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평 일	토요일·공휴일	비 고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당		10,000		3시간 기준
	월회원	개인	30,000(40,000)		1인기준 (야간조명포함)
		클럽	20,000		
중구테니스장	코트당	주간	20,000		3시간기준 (야간조명포함)
		야간	30,000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중구다목적구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50,000	80,000	2시간 기준
중구수영장	1일 입장료	성인	5,000		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청소년	4,500		
		어린이	4,000		
	월회원	성인	60,000		
		청소년	55,000		
		어린이	50,000		
중구야구장	체육경기		80,000 (100,000)	120,000 (150,000)	3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160,000	240,000	3시간 기준

1. 팔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 포함) 사용시 요금임
2.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
3.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가족포함)이 중구수영장 및 중구테니스장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할인한다.
4. 수영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0분의 10 할인한다.
5. 중구야구장의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 사용 요금은 중구민외 참여 인원이 1/2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개정안】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평 일	토요일·공휴일	비 고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당		10,000		3시간 기준
	월회원	개인	30,000(40,000)		1인기준 (야간조명포함)
		클럽	20,000		
중구테니스장	코트당	주간	20,000		3시간기준 (야간조명포함)
		야간	30,000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중구다목적구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50,000	80,000	2시간 기준
중구수영장	1일 입장료	성인	5,000		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청소년	4,500		
		어린이	4,000		
	월회원	성인	60,000		
		청소년	55,000		
		어린이	50,000		
중구야구장	체육경기		80,000 (100,000)	120,000 (150,000)	3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160,000	240,000	3시간 기준
학성다목적체육관	월회원	개인	25,000		2시간 기준
		클럽	12,500		

1. 팔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 포함) 사용시 요금임
2.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
3.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가족포함)이 중구수영장 및 중구테니스장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할인한다.
4. 수영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0분의 10 할인한다.
5. 중구야구장의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 사용 요금은 중구민외 참여 인원이 1/2이상일 경우 적용한다.